

한국증권전산(주) 지불중계서비스 이용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을”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매입서비스, 휴대폰 결제서비스, ARS 결제서비스, 계좌이체 서비스(이하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판매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을”이 제공하는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 처리 방법 및 대금의 지급 절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인터넷 쇼핑몰 : “갑”이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개발하여 운영 또는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장비 또는 시스템
2. 구매자 :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서비스 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자를 칭함
3. 인터넷 지불중계시스템 :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을”의 지불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매입”, “ARS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을 안전하게 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안 암호화 등이 적용된 장비 및 S/W
4. 신용카드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및 수기, EDI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갑”을 대상으로 “갑”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대금을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사에 매입 요청한 후, 그 대금을 “갑”과 “을”이 정산하는 서비스
5. 신용카드 지불정보 : “구매자”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성명 등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기 위한 정보
6. 신용카드 거래승인 :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구매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 지불 정보를 “을”의 “신용카드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연체, 한도초과, 기타 거래정지 등 거래의 유효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7. 신용카드 매입 : “갑”이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승인을 받은 거래건에 대해 그 대금의 정산을 위해 “을”이 “갑”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로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8. 신용카드 정산 : “을”이 제공하는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입”절차에 의거 신용카드사로부터 “을”에게 지급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관련 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9. 정산 관리 시스템 : “갑”이 물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을 완료한 후 “을”에게 대금의 “매입”, “정산” 요청 및 “거래취소”를 하기 위해 “을”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10. On-Line 취소 시스템 : “거래취소” 등의 기능을 위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Sample S/W.

11.개인인증서비스 :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뒷 7 자리와 비밀번호 앞 2 자리에 대한 개인확인 서비스

12.휴대폰 결제 서비스 :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이동통신사가 수납 대행하는 서비스

13.ARS 결제 서비스 : ARS 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전화를 건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금하고, 이를 한국통신이 수납 대행하는 서비스

14.계좌이체 서비스 : “갑”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콘텐츠 서비스의 판매 대금을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15.지불 정산 : “을”이 제공하는 지불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 은행, 한국통신,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을”에게 지급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관련 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제 3 조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계약해지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2.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써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 본 계약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관련 별도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나.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 다. “갑” 또는 “을”에게 국제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전업, 휴업, 폐업,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 라. 관청 또는 제 3 자에 의해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마. “갑”의 거래 중 신용카드 부도반환건 또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거래이의신청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부도반환금액이 대규모인 경우
 - 바. “갑”의 거래 중 신용카드 불법할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 사. “갑”과 “을”의 서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상호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단, 할부거래 및 부도반환(불법거래, 업체파산 등) 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취소에 대비하여 “을”은 “갑”의 정산 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보류할 수 있다. 단, 지급보류되는 정산금액의 일부는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 조 책임과 의무

1.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 가. “구매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키 위한 “인터넷 쇼핑몰”의 제반 운영
 - 나.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시간내 배송 또는 전달과 이의 확인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 보

한국증권전산(주) 지불중계서비스 이용 계약서

관

- 다. 거래안전을 위해 “을”의 요구시 위 “나”항의 증빙 자료 제시
 - 라.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처리
 - 마. “구매자”의 환불, 반품, 취소요구등에 따른 제반 처리
 - 바.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갑”의 성실한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발행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갑”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정산대금을 30 일간 유보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사. “갑”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코자 하는 “구매자”의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갑”에게 있다.
 - 아.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정한 사항 외 “갑”의 고객이 “을”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의 판매행위와 “을”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일반 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 가. “구매자”가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 및 콘텐츠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ARS 결제, 계좌이체 결제 요청에 대한 거래승인
 - 나. 위 “가”항에 의해 승인된 거래에 대한 “매입”
 - 다. “갑”과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
 - 라. “을”은 “갑”이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판매 및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 5 조 서비스 조건

- 1. 본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종류는 “을”과 신용카드사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카드에 한정된다.
- 2. “을”은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으면 상호 협의된 주기 단위로 “갑”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3. “을”은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를 연중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통보하며,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 중단은 “갑”에게 사후 통보한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지급조건

- 1. 서비스 이용료는 초기등록비와 지불중계수수료(신용카드 결제, ARS 결제, 핸드폰 결제, 계좌이체)로 구성된다. (단,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개인인증서비스 수수료 별도)
- 2. 지불중계수수료는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을”의 승인대행 수수료를 포함한다.
- 3. 개인인증 서비스 수수료는 승인요청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에 인증요청을 거친 중계건에 대해 “을”이 “갑”에 대하여 부과한다.

- 4. 위 “ 1” 항의 초기등록비는 “ 갑” 이 “ 을” 에게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며, 납부한 초기등록비는 환 불되지 않는다.
- 5. 위 “ 1” 항의 수수료는 “ 갑” , “ 을” 간의 정해진 주기에 따른 대금 정산 시 “ 을” 에 의해 선 공제한다.
- 6. 세부적인 초기등록비와 수수료는 별첨 1 에 기입한 내용을 따른다.

제 7 조 매출의 귀속

- 1.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매출은 “을”의 가맹점 명의로 매입처리 되더라도 “갑”의 매출로 귀속된다.
- 2. “갑”과 “을” 각사는 관련법에 의거 각사의 매출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을”은 이의 신고의무를 확인할수 있으며, 이의 불이행시 계약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정산

- 1. 신용카드 결제의 정산
 - 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갑”의 매출 건에 대한 정산은 별첨 1의 내용을 따른다
 - 나. 매 금요일의 신용카드 정산금액의 합계(이월된 정산금액 포함)가 100 만원 미만일 경우, 차주 금요일 정산으로 이월하여 지급한다. 단, 해당월 신용카드 정산금액의 합계가 100 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월 1회 이상 정산 지급한다.
 - 다. 매입 및 정산절차
 - ① “갑”은 “신용카드 거래 승인” 확정거래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근거로 “을”의 정산관리 시스템에 정산요청(매입요청 등록)을 한다
 - ② “을”은 위 “나”호 “①”목에 의거 접수된 정산 요청(매입 요청 등록)을 “갑”의 매출 자료와 비교, 대조하여 해당 건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을”의 지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된 금액을 약정된 정산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 라. “갑”의 정산 요청(매입요청 등록)내역이 “을”의 매입요청에 의거 신용카드사로부터의 입금 내역과 상이할 경우, “을”은 “갑”에게 동 내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접수한 “갑”은 접수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을”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대금의 정산은 쌍방의 합의 시까지 유보한다.
 - 마. “을”이 “갑”에게 위 “4”조 “1”항 “다”호의 증빙자료를 요청 시, “갑”이 해당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에게 동 대금 정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정산되어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차기 정산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 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에 “갑”은 차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한국증권전산(주) 지불중계서비스 이용 계약서

2. 계좌이체 정산

- 가. 계좌 이체를 통한 “갑”의 매출 건에 대한 정산은 별첨 1의 내용을 따른다
- 나. “을”은 은행으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을”의 지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된 금액을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3. 휴대폰 결제의 정산

- 가. 휴대폰 결제를 통한 “갑”의 매출 건에 대한 정산은 1개월간의 매출 건으로 하며 해당 건에 대한 지급은 거래월(N)을 기준으로 (N+3)월 5일 이후 최초 금요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 나. “을”은 이동 통신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을”의 지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된 금액을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4. ARS 결제의 정산

- 가. ARS 결제를 통한 “갑”의 매출 건에 대한 정산은 1개월간의 매출 건으로 하며 해당 건에 대한 지급은 거래월(N)을 기준으로 (N+3)월 5일 이후 최초 금요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 나. “을”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을”의 지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된 금액을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5. 정산 관련 공통사항

- 가. 매 금요일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정산금액의 합계(이월된 정산금액 포함)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차주 금요일 정산으로 이월하여 지급한다. 단, 해당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정산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월 1회 이상 정산 지급한다.
- 나. “을”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송부한다.
- 다. 대금 정산 시, “갑”의 정산 청구 요청 지연 등의 경우 차기 대금 정산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 라.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송금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 마.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정산한다.
- 바. “을”이 “갑”에게 위 “4” 조 “1”항 “다”호의 증빙자료를 요청 시, “갑”이 해당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에게 동 대금 정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정산되어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차기 정산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 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에 “갑”은 차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제 9 조 매출의 취소 등

1. 신용카드 결제의 취소

- 가. 본 서비스에 의해 기 승인된 거래 건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사의 거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동 승인 취소를 정산 관리 시스템 또는 “을”이 제공한 On-Line 취소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다.
- 나. 본 서비스에 의해 “매입”이 완료된 거래 건에 대

해 “구매자”가 신용카드사의 거래 규정에 따라 매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동 매입 취소를 정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다.

- 다. “구매자”가 “을”에게 직접 승인 취소, 매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동 취소요청 내역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은 통지 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동 취소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을”은 “구매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 라. 위 “나”항과 “다”항의 취소요청 해당 건에 대한 금액이 “갑”, “을” 간에 기정산된 경우, “을”은 해당 금액을 차기 정산 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 마. 본 서비스 중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의 거래 승인내역에 포함된 다수의 물품 중 일부 물품의 거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승인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휴대폰 결제의 취소

- 가. 본 서비스에 의해 기 승인된 거래 건에 대해 “구매자”가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동 거래 취소를 정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다. 단, 011,016,017,018의 경우에는 당월 거래에 대하여 당월 내에 취소 요청하여야 하며, 019의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 거래에 대하여 당월 15일 이내에 취소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점이 지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나. 위 “가”항의 취소요청 해당 건에 대한 금액이 “갑”, “을” 간에 기정산된 경우, “을”은 해당 금액을 차기 정산 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3. ARS 결제의 취소

- 가. 본 서비스에 의해 기 승인된 거래 건에 대해 “구매자”가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동 거래 취소를 정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다. 단, 당월 거래에 대하여는 당월 내에 취소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월이 지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나. 위 “가”항의 취소요청 해당 건에 대한 금액이 “갑”, “을” 간에 기정산된 경우, “을”은 해당 금액을 차기 정산 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4. 계좌이체의 취소

계좌이체의 경우 매출을 취소할 수 없으며, “구매자”로부터 입금되어 기정산된 금액에 대하여는 “갑”이 “구매자”에게 직접 환불한다.

제 10 조 부도반환의 처리

- 1. 본 서비스에 의한 매출 후 “구매자” 본인 및 배달 미확인 등의 경우를 포함한 “구매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부도반환은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 한다.
- 2. “을”은 “갑”에게 기 “정산”완료 후 지급한 대금 중에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등 포함)으로 확인된 매출 건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을”에게 통지된 내역과 해당 금액을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대금 “정산”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한국증권전산(주) 지불중계서비스 이용 계약서

3. 위 “2”항의 통지를 받은 “갑”은 통지 내용을 확인한 후 “을”에게 정산 청구한다. 이의 지연에 따른 해당 정산금 미지급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4. “을”은 위 “1”항과 관련하여 “갑”이 행하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제 11 조 매출내역의 보관 등

“갑”, “을”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을” 각각의 필요에 의해 상대방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특정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파업, 회선장애 등 불가항력에 의한 문제발생 시 또는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VAN 사, 은행, 휴대폰 결제업체 등의 장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상호간 묻지 않기로 한다.

제 13 조 정보 유출의 금지

“갑”,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이나 구매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4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한 후 “갑”, “을”의 문서상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15 조 대금지급 관련 추가 서비스

본 계약 내용의 서비스와는 별도로 대금지급과 관련한 신용카드사와의 추가 서비스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서상의 합의에 의한다.

제 16 조 통지

본 계약 관련 “갑”, “을” 간의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각 상대방에게 도달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17 조 상표 및 사용권

“갑”, “을”은 상호 상표사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 한 “갑”, “을”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8 조 양도

“갑”은 “을”과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제 19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 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

(인)

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정기 (인)

한국증권전산(주) 지불중계서비스 이용 계약서

별첨1. 한국증권전산 전자지불중계서비스 Payzone 계약 내용

구 분	내 역		
서비스명	한국증권전산 대행가맹점 중계서비스		
계약기간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인)	대표자주민번호	
사업장주소			
URL		판매상품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이메일		담당자팩스번호	
가맹점서비스아이디		가맹점서비스비밀번호	
초기등록비	200,000원(VAT 별도) - www.payzone.co.kr 에서 결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매출액의 4.0%(VAT 별도) (신용카드사 수수료 포함)		
휴대폰결제수수료	매출액의 9.0%(VAT 별도) (이동통신사 수수료 포함)		
ARS결제수수료	매출액의 11.0%(VAT 별도) (한국통신 수수료 포함)		
계좌이체수수료	매출액의 1.8%(VAT 별도) (은행 수수료 포함) (10,000원 이하일 경우 건당 200원)		
정산주기	주정산 : 전전주 목요일 전주 수요일 거래분(매입기준)을 금주 금요일 지급		
보증보험증권	오백만원(월 거래액의 10%)	월거래한도액	오천만원
첨부서류	법인	1.사업자등록증사본 2.법인등기부등본 3.법인인감증명서 4.통장사본	
	개인	1.사업자등록증사본 2.주민등록등본 3.개인인감증명서 4.통장사본	

한국증권전산(주) 지불중계서비스 이용 계약서

2.

()

200

				()

1.	:		.	
2.	:		.	

- 1. 1
- 2. 1
- 3. () 1
- 4. 1